

事業者團體의 機能과 規制

李 奎 億
李 在 亨

目 次

- I. 事業者團體 規制의 意義
- II.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 III. 우리나라 事業者團體의 現況
- IV. 事業者團體의 活動과 評價: 事例研究
- V. 結 言

I. 事業者團體 規制의 意義

‘事業者團體’란 그 形態 여하를 불문하고 2人 이상의 事業者가 共同의 利益을 증진할 목적으로 組織한 結合體 또는 그 聯合體를 말하

筆者: 李奎億—韓國開發研究院 先任研究委員, 李在亨—韓國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

- 1)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公正去來法”) 第 2條②項
- 2) 水平的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者間의 團體는 물론, 特定製品의 生産·分配·小賣段階에 증사하는 垂直的 關係에 있는 事業者間에 조직된 團體도 포함된다.
- 3) 현재 大韓藥師會, 導船士協會 등은 事業者團體로 經濟企劃院에 申告되어 있으나 辯護士協會, 醫師會, 公認會計士協會 등은 申告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는 것으로¹⁾ 여기서 “結合體”란 個別事業者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이며 ‘聯合體’란 각 事業者團體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를 지칭한다. 事業者團體는 일반적으로 非營利的, 相互協調的, 自發的인 團體로서 그 類型으로는 同種의 事業活動에 증사하고 있는 事業者를 構成員으로 하는 同業者團體²⁾와 一定地域에 事業活動의 本據 또는 據點을 두고 있는 各樣·各種의 事業에 증사하고 있는 事業者를 構成員으로 하고 있는 地域團體가 있다. 廣意의 事業者團體에는 狹義의 事業者團體(trade association)와 職業人團體(professional association)가 있는데 美國·日本 등에서는 이를 일괄해서 事業者團體로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現在 불분명한 狀態로 있다³⁾.

經濟社會에서 事業者團體가 수행하는 활동은 두가지 對立되는 側面을 갖고 있다. 먼저 肯定的인 側面에서 보면, 事業者團體는 經營合理化, 技術 및 効率性의 向上, 規格改良, 市場情報의 公開 등 여러 分野에 걸쳐 主導的 活

動을 함으로써 構成事業者의 事業活動에 유익한 一般的 條件을 整備하여 産業의 全般的인 競爭을 促進한다. 事業者團體 가운데서도 地域團體는 一定地域에서 營業活動을 영위하는 모든 業種의 事業者를 포괄하여 그 地域 事業者 전체의 事業活動을 진흥할 수 있으며, 또한 同業者團體라도 大企業에 對抗的인 關係를 갖는 中小企業者의 相互協調組織으로서 構成事業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向上에 기여하는 活動을 행하는 경우 등은 오히려 競爭을 促進하는 效果가 있으므로 肯定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事業者團體의 否定的인 側面으로서는 事業者團體는 本質的으로 構成事業者의 共同利益을 增進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市場의 競爭狀態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事業者團體는 構成事業者 相互間의 競爭을 排除함으로써 獨占利潤을 향유하려는 獨占指向的인 傾向을 필연적으로 갖게 마련이라는 側面에서 反競爭의 效果가 크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兩面性을 갖는 事業者團體의 性格을 前提로 하여 事業者團體에 관한 規制는 大別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事業者團體가 갖는 私的 統制機能을 經濟統制의 手段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政府가 制度的으로 事業者團體의 活動을 支援·補強하는 것을 主眼點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60年代初 政府의 産業政策 執行手段으로서 事業者團體活動을 강화한 것이라든가 日本 軍國主義下에서 經濟統制를 위한 事業者團體의 活用, 第2次大戰時 美國의 戰時體制下에서 効率的인 物資動員을 위한 政府와 事業者團體간의 協調體制등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둘째, 이와 정반대로 民主的인 國民經濟

의 秩序를 확보하려는 입장에서의 事業者團體에 대한 政策으로서 여기에는 目的에 따라 다시 다음의 두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① 不特定多數의 利用者의 利益을 위하여 오히려 一定 限度에 있어서 事業者團體의 私的 統制機能을 용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각종 團體組織法에 의하여 事業者團體를 規制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中小企業 協同組合法에 의거한 中小企業協同組合, 輸出組合法에 의거한 輸出組合, 酒稅法에 의거한 각종 酒類業團體의 活動領域 設定 등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② 事業者團體의 反競爭의 行爲를 禁止하는 것을 主眼點으로 하고, 또한 競爭秩序違反을 防止하기 위한 監視體制를 확립하려는 制度로서 市場競爭原理를 가급적 活用함으로써 民主的인 國民經濟秩序를 확보하려는 經濟法制의 基本立場으로 「公正去來法」第18條에 의한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規定이 이에 속한다.

競爭秩序維持政策의 立場에서 볼 때 事業者團體의 活動은 市場의 競爭狀態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活動과 濫用되지 않는 한 競爭秩序 沮害의 問題를 發生시키지 않는 活動, 그리고 競爭을 沮害하는 效果를 초래하는 活動의 세 가지 類型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類型으로는 研究·調査, 商事仲裁, 共同保險, 共同宣傳, 需要振作活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活動은 構成事業者의 事業活動을 좀더 순탄하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두번째 類型의 活動으로는 情報交換, 原資材의 共同購入, 共同研究, 製品의 規格化·標準化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活動은 方法에 따라서 市場의 透明性을 提高함으로써 競爭을 促進하고, 企業의 效率性과 合理化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濫用될 경우에는劃一的인 市場行態의 誘導, 需要 및 生産展望의 誤導에 의한 生産施設·新規進入의 制限, 生産品目的 制限 등으로 競爭을 沮害할 可能性 또한 크다. 세번째 類型으로는 價格統制, 生産 및 販賣의 調整, 去來相對方 또는 去來地域의 制限, 販賣條件의 制限, 販賣後顧客奉仕(after-service)의 排除 등이 있는데 이러한 活動은 그 形態 여하를 불문하고 競爭을 沮害함으로써 公共의 利益을 침해하게 된다⁴⁾.

II.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公正去來法」第18條 ①項에서는 事業者團體가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行爲(1號),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事業者數를 制限하는 行

爲(2號), 構成事業者의 事業內容 또는 活動을 不當하게 制限하는 行爲(3號), 構成事業者에게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게 하는 行爲(4號)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同法 第23條에서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不當한 國際契約을 締結하는 것을 制限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公正去來法」의 趣旨上 禁止되어야 할 事業者團體의 各種行態를 주로 우리나라의 事例를 통해 檢討해 보기로 한다.

1. 競爭의 實質的 制限

가. 行爲形態

事業者團體가 「公正去來法」 第11條 ①項에 規定된 不當한 共同行爲를 자행함으로써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公共의 利益에 반하여”라는 但書要件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行爲가 事業者團體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는 항상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行爲이므로 公益侵害 여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當然違法이라는 것을 意味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違法行爲의 諸樣態⁵⁾

① 價格統制行爲: 價格統制行爲의 類型으로는 構成事業者의 價格을 직접 統制하는 行爲, 價格情報交換, 低價格販賣制限의 세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첫번째 類型에는 事業者團體를 주축으로 構成事業者들이 공동으로 價格을 決定 또는 維持하는 行爲는 물론 公正價格, 希

4) 美國에서는 i) 事業者團體의 許容行爲로 ① 共同宣傳 ② 教育 및 訓練 ③ 研究·開發(R&D)事業 ④ 倫理綱領(code of ethics)의 채택 ⑤ 로비活動 ⑥ 勞務需給 ⑦ 統計蒐集, ii) 違法行爲로 ① 消費者 및 政府에 유익한 統計報告作成의 거부 ② 構成員의 價格變動을 즉각적으로 상세히 발표하거나 將來의 價格變化를 미리 제시하는 것 ③ 構成員의 현재 生産에 관한 統計를 상세히 公開하는 것 ④ 현재 또는 장래의 價格에 관한 統計調査의 發刊 ⑤ 排他的 標準의 設定(exclusionary standard setting) ⑥ 排他的인 會員資格의 制限 ⑦ 倫理綱領의 強制實施 ⑧ 集團排斥 ⑨ 政府에 대한 反競爭의 政策의 채택 的인, iii) 行爲內容 및 目的에 따라 違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① 製品의 標準化 ② 統計資料의 蒐集 및 配布 ③ 原價資料 및 價格統計의 蒐集 ④ 顧客의 信用狀態에 관한 調査 ⑤ 免許의 發給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違法行爲에 價格統制, 生産制限, 地域制限, 去來相對方制限 등의 競爭制限 및 不公正去來行爲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그러한 행동은 當然違法(per se illegal)이므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 「公正去來法」 第11條의 不當한 共同行爲登錄에 관한 經濟企劃院의 審査基準을 중심으로 논의함. 이에 관하여는 李奎憲(1982) 참조.

望價格, 基準價格, 目標價格 등의 형태로 價格設定基準을 構成員에게 通告하는 行爲도 포함된다⁶⁾. 두번째 類型은 構成事業者의 價格變更意思, 價格變更時期, 價格變更率, 其他 將來의 價格에 관한 諸事項에 관하여 情報를 蒐集하여 構成員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會合등을 통해 構成事業者間에 情報交換을 促進함으로써 構成事業者間에 價格制限에 관한 暗默의 諒解 또는 共通된 意思가 形成되도록 하는 것이다⁷⁾. 마지막 類型으로는 構成事業者가 一定價格 이하로 販賣하는 것을 制限하거나 낮은 價格으로 販賣한 構成事業者에게 販賣物品을 回收할 義務를 부과하거나 낮은 價格으로 販賣하는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妨害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⁸⁾.

② 販賣 및 代金支給條件 制限: 競爭事業者

또는 去來相對方을 不當하게 差別하거나 그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制限하는 去來條件이나 支給條件을 정하는 行爲로서 價格統制와 거의 同一한 效果를 가지고 있다.

③ 數量制限行爲: 構成事業者에게 직접적으로 生産 및 販賣物量을 制限하게 하는 行爲는 당연히 違法이지만 그외에도 需要豫測에 관한 情報交換 또는 資料의 配布를 통해 間接적으로 構成事業者間에 供給數量에 관한 默示의 諒解 또는 共通의 意思가 形成되도록 하는 行爲도 違法行爲에 포함된다. 즉 需給調整을 목적으로 하여 短期的인 需要豫測에 관한 資料를 作成하여 이에 관련된 構成事業者의 供給計劃에 관한 意見交換을 하게 하는 등의 行爲가 數量制限을 위한 情報交換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數量制限行爲는 그 자체가 目的이라기보다는 價格制限을 위한 補完的手段으로서 주로 행해지게 된다⁹⁾.

④ 去來相對 또는 去來地域制限行爲: 事業者團體가 構成事業者에게 去來相對方이나 去來地域을 割當하는 行爲를 말하는 것으로 構成員間에 顧客爭奪을 制限하는 것도 禁止行爲에 포함된다. 價格引上의 實効性を 確保하기 위해 構成事業者간의 競爭의인 價格策定の 防止, 다른 構成事業者의 去來相對에 대한 販賣禁止, 構成事業者들 共同的 顧客에 대하여 廉價販賣禁止를 결정하는 것 등의 行爲가 顧客爭奪制限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⁰⁾.

⑤ 設備 및 技術에 관한 制限: 生産을 制限하기 위하여 設備의 新·增設이나 運轉을 制限하는 行爲, 設備의 共同廢棄, 構成事業者간의 投資調整, 新技術의 開發 및 導入의 制限 등과 같은 行爲가 이에 속한다. 또한 事業者團體가 短期的인 需要豫測으로 投資活動에 관

6) 우리나라의 事例로 「全國메리야스商友會」가 協定價格을 준수할 것과 違反時에는 同商友會의 조치에 대해 異意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會員에게 돌려 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是正勸告 第2號, 1981.9.21), 「大韓藥師會」와 同 서울特別市支部에 의한 表示價格表配付 및 준수 권고(是正勸告 第82-1號, 1928.3.2), 「서울特別市 茶房組合」江西支部의 協意에 의한 茶類價格決定(是正命令 第8號, 1981.9.2) 등이 있음.

7) 美國의 경우 대부분의 違法的인 事業者團體의 活動이 이와 같은 類型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事件으로는 構成員의 價格, 原價, 生産數量, 장래 需要展望 등에 관해 지나치게 상세한 資料를 수집·배포함으로써 競爭을 事前的으로 防止한 「American Hardwood Manufactures' Association」事件(1921)을 들 수 있음. 日本의 경우 「板紙聯合會事件」(1970)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事例가 없음.

8) 우리나라 事例로는 「南加佐洞市場 메리야스親睦會」가 協定價格을 設定하고 違反者에게는 법적으로 損害賠償義務을 規定한 경우(是正命令 第9號, 1981.9.21)가 있음.

9) 우리나라의 事例로는 「大韓타이어工業協會」(是正命令 第12號, 1981.10.21), 「韓國製紙工業聯合會 板紙分科委員會」(是正命令 82-6호, 1982.3.10)가 製品販賣價格維持를 위해 生産 및 出庫調節, 去來處 制限제한 등을 결정한 경우가 있음.

10) 우리나라의 事例로는 脚註 9)에서 말한 「大韓타이어工業協會」 및 「韓國製紙工業聯合會 板紙分科委員會」의 去來處 侵犯制限이 있음.

한 基準을 設定하여 各 構成事業者의 自主的인 投資活動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事業者 相互間의 意見 交換으로 개별 投資活動을 制限하거나 그 내용이 현재 또는 장래의 需給關係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禁止되어야 할 것이다.

⑥ 種類 또는 規格 등에 관한 制限: 事業者 團體가 각 構成員이 生産·販賣하는 製品의 種類, 品質, 規格 등을 制限하는 것은 一般的으로 價格制限行爲를 補完하는 機能을 갖는 것으로 構成事業者의 競爭手段을 制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需要者の 利益을 저해하게 된다는 論據에서 禁止되고 있다.

2. 事業者數의 制限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事業者數를 制限”하는 것이란 市場進入에 대한 私的인 人爲的 障壁을 말하며 이는 新規 進入을 저지 내지는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既存事業者를 排除하는 등의 方法으로 事業者數의 增加를 制限하는 것이라고 일괄하여 하나의 行爲樣態로 취급할 수 있다. 事業者數 制限의 類型으로는 事業者團體 또는 그 構成員

들이 企業의 新規進入을 직접적으로 防害하는 行爲와 事業活動의 영위를 위해 事業者團體의 加入이 필수적인 여건하에서 團體의 加入을 制限하는 行爲로 大別할 수 있다.

事業者團體가 構成事業者로 하여금 非構成 事業者와의 去來를 禁止하거나 構成事業者와 去來關係에 있는 第3者에 대해 非構成事業者와의 去來를 하지 못하도록 壓力을 가하는 行爲등이 前者에 속하며, 團體加入資格을 限定하거나 要件을 強化하여 新規加入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新規事業者의 市場進入을 방해하는 行爲등이 後者の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¹¹⁾.

3. 事業內容 또는 活動의 不當制限

‘事業內容’이란 事業의 存在形態 및 方法을 말하며 ‘活動’이란 事業內容이 現實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動的狀態를 일컫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不當한 制限’이란 構成事業者의 事業內容 및 活動을 制限함으로써 公正한 競爭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行爲를 의미하는데, 즉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可能性을 갖는 段階 또는 樣態를 지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不當한 制限의 禁止條項은 ‘競爭의 實質的 制限’의 可能性을 事前에 방지하려는 豫防的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不當한 制限은 價格制限行爲와 價格制限 이외의 制限行爲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價格에 관한 不當한 制限은 構成事業者가 同業者중의 일부인 경우, 特定 商標製品 取扱業者團體에 의한 價格決定, 同種 商品 중의 일부분에 대한

11) 이에 관한 구체적인 事例은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없었으므로 日本의 事例을 살펴보면 前者의 事例로서 日本의 「全國레코드商 組合聯合會」가 그 산하에 있는 販賣業者團體로 하여금 新規販賣店의 團體 加入을 制限토록 함과 동시에 레코드 製造業者에 대해 團體 非構成員인 레코드 販賣業者에게 製品을 販賣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데 대해 日本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數制限行爲 禁止條項을 위반한 것이라 판시하였다(1962). 또한 後者の 事例로서 「鳥取青果商組合」은 組合에 加入하지 않는 한 當該 地域에서 青果物 販賣業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여건하에서, 新規加入者의 資格要件으로 店舖를 기존 組合員의 店舖로부터 300 m 이상 간격을 두는 것 등의 制限을 가한 바 역시 事業者數制限禁止條項 違反으로 判定하였다(1965).

價格決定 등이 있을 수 있다. 價格制限 이의의 制限行爲로는 去來先의 制限, 構成事業者의 施設 등에 관한 制限, 特定 構成事業者에만 관련된 事業活動上의 制限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本4號의 行爲樣態는 1號의 競爭의 實質的 制限과 大同小異한데 다만 1號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構成員이 不當한 行爲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반해 第4號는 不當한 行爲에 참여하게 되는 構成事業者가 全體事業者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現實的인 競爭制限 效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可能性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條項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1號와 4號의 적용상 차이점은 不當行爲에 참여하는 事業者數의 범위 혹은 共同行爲의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4.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勸誘·强制

事業者團體가 그 構成事業者에게 「公正去來法」第15條에 規定된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第20條의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도록 勸誘 또는 强制하는 行爲를 말하며 이 경우 構成事業者가 事業者團體의 勸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지 않던 간에 勸誘 또는 强制 그 자체로서 이미 違法的인 行爲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不公正去來行爲는 去來相對方의 不當한 差別的 取扱, 不當하게 競爭者를 排除하기 위한 去來, 不當한 顧客誘引, 去來上의 지위를 不當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行爲, 不當拘束條件附去來, 虛偽·誇張 廣告 또는 質·量에 관한 欺瞞行爲의 6가지 類型으로 분류된

다. 이는 구체적으로 不公正去來行爲로 指定·告示된 不當한 去來拒絶, 去來條件등의 差別取扱, 集團排斥 및 集團의 差別取扱, 差別代價, 不當廉賣 및 不當高價買占, 不當한 顧客誘引, 不當表示, 不當한 去來强制, 優越的 地位의 濫用, 不當排他條件附 去來, 不當拘束條件附 去來, 虛偽·誇張廣告 및 欺瞞行爲의 12가지 行態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公正去來法」에서 禁止하고 있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勸誘 또는 强制行爲는 당연히 禁止되어야 하겠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法에 의해 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許容되거나(著作物등) 「公正去來法」第20條 ②項 各號의 要件充足으로 再販賣價格維持의 指定을 받은 경우(化粧品等)에 있어서도 事業者團體가 再販賣價格의 準수를 勸誘 또는 强制하는 行爲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事業者團體가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개입할 경우 集團의 再販賣價格維持의 성격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再販賣價格維持行爲 承認要件으로 「公正去來法」第20條 ②項 3號에서는 ‘當該商品에 대하여 自由로운 競爭이 行하여지고 있을 것’을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特定商品에 대해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許容할 필요가 있더라도 個別的 再販賣價格維持行爲만을 허용함으로써 當該市場에서의 自由로운 競爭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法精神에 비추어 當該市場의 競爭을 저해하게 되는 事業者團體에 의한 集團의 再販賣價格維持行爲는 당연히 禁止되어야 한다.

5.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正去來行爲를 내용으로 하는 國際的 協定이나 契約(이하 ‘國際契約’이라 함)을 締結하는 行爲는 禁止되고 있는데, 여기서 國際 契約이란 外資導入法에 의한 借款契約·合作 投資契約 및 技術導入契約과 原資材 및 資本財 輸入契約을 제외한 商品의 輸入이나 用役의 提供에 관한 1年 이상에 걸친 輸入代理店契約 과 長期輸入契約을 말한다¹²⁾. 國際契約에 있어서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正去來行爲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事項은 아래와 같다¹³⁾.

① 技術導入契約: 技術提供者가 原材料 및 部品 등의 購入相對方을 制限하는 行爲와 導入 技術로 製造한 製品(이하 “契約製品”)의 販賣地域을 制限하는 行爲는 禁止되고 있으나, 다만 이 경우 技術提供者가 스스로의 技術 및 販賣地域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契約製品의 販賣窗口·販賣數量·販賣價格의 制限, 競爭的 製品 및 技術의 사용 制限, 不平等한 技術交換義務, 不當拘束條件附 契約, 技術使用料에 대한 濫用 등이 禁止 行爲에 포함된다.

② 合作投資契約: 原材料 및 部品 등의 購入 相對方 制限, 販賣窗口의 制限, 불평등한 理事 數의 比率, 不平等한 理事會의 決定權, 內·外國人 投資家간의 분쟁시 不當한 解結方法, 不當拘束條件附 契約 등이 禁止行爲에 포함된다.

③ 借款契約: 貸主의 임의적 償還通貨 選擇 權借, 主의 歸責事由 없이 任意로 先償還을 요구하는 경우, 物資供給者의 制限, 不當拘束 條件附 契約 등이 禁止行爲에 해당된다.

④ 輸入代理店契約: 契約製品의 部品 등의

購入相對方 制限, 再販賣窗口·再販賣價格·再販賣地域의 制限, 契約製品과 [競爭的인 製品의 取扱制限, 契約製品의 輸入相對方 制限, 不當拘束條件附 契約 등이 禁止行爲에 포함된다.

⑤ 長期輸入契約: 禁止行爲 類型은 輸入代理店 契約上的 內容을 準用하고 있다.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을 制限하는 것은 一次的으로는 開放時代에 대비하여 國內市場 秩序를 보호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지만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國內事業者의 對外交渉力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된다. 즉 國際契約時 外國의 事業者가 優越的인 地位를 이용하여 不當한 요구를 할 경우, 國內事業者는 「公正去來法」을 이유로 그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Ⅲ. 우리나라 事業者團體의 現況

우리나라의 事業者團體는 特別法에 의해 設立된 法定團體와 民法에 의해 設立된 團體(法人), 事業者들이 任意로 조직한 任意團體의 3 種類로 구분된다. 法定團體로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 「輸出組合法」에 의거한 輸出組合, 其他 特別法에 의한 各種 團體들이 있으며 이들 외의 團體는 法人格 有無에 관계없이 편의상 任意團體로 통칭하고자 한다.

經濟企劃院에 申告된 우리나라 事業者團體 數는 1981年 1月 現在 총 597個이며 이들 가운데 活動地域을 全國一圓으로 하는 全國單位

12) 「公正去來法」第23條 ①項

13) 經濟企劃院告示 第50號(1981. 7. 18)

團體는 235個가 있다. 이를 所管部處別로 요약하면 <表 1>에서와 같이 商工部 傘下 團體가 123個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農水産部, 保社部, 交通部 傘下團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全國의 事業者團體를 設立根據別로 분류하면 <表 2>에서 보듯이 特別法에 의해 設立된 團體가 367個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中小企業協同組合이 半數 가까이

<表 1> 所管部處別 事業者團體 現況(1982.1)

	計	內務	財務	文教	農水産	商工	動資	建設	保社	交通	遞信	文公	其他
法定團體	130	4	2	—	12	82	2	4	11	10	1	2	—
任意團體	105	4	2	1	17	41	5	2	10	12	—	10	1
計	235	8	4	1	29	123	7	6	21	22	1	12	1

註: 全國單位團體
資料: 經濟企劃院

<表 2> 設立根據別 事業者團體 現況(1982)

合計	特別法			民法	任意設立
	中小企業協同組合法	其他特別法	計		
597 (100.0)	185 (31.0)	191 (32.0)	376 (63.0)	180 (30.2)	41 (6.9)

註: 支部, 支會 등의 設立根據는 中央會의 設立根據와 同一하다고 봄.
資料: 經濟企劃院

<表 3> 全國單位 事業者團體의 業種別 分類

	1962	1970	1978	1982
鑛業 ¹⁾	1	4	4	—
製造業	49	91	126	145
第1次金屬	2	4	7	3
金屬製類·機械·裝備	10	14	22	34
化學·石炭· 고무 및 플라스틱製類	11	17	25	22
衣服·衣類 및 皮革	7	14	15	24
製紙, 印刷 및 出版	5	8	10	11
飲食料品	6	16	24	28
非金屬鑛物製品	5	8	10	11
木材 및 木材製類	1	4	4	4
其他製造業	2	6	9	8
建設業				9
運輸·倉庫業				24
都·小賣業				45
飲食·宿泊業				4
個人서비스業				8
計				235

註: 1) 1982年의 경우 分類上 問題로 製造業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資料: 各事業者團體, 1962~1978, 經濟企劃院, 1982,

차지하고 있다. 事業者團體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는 特別法은 <附表 1>과 같은데 이러한 法律에 의거하여 所管部處長官은 事業者團體의 事業內容 및 活動領域을 設定하고 각종 統制 및 監督을 하고 있다. 事業者團體를 業種別로 分類하면 <表 3>과 같이 製造業이 145個, 運輸·倉庫業 및 都·小賣業이 각각 24個 및 45個로서 이들 3業種에 속한 事業者團體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事業者團體는 1961年末까지 14個의 任意團體가 있었지만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첫해인 1962년부터 政府主導의 開發戰略을 効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해 中小企業의 團體化 및 輸出促進을 위한 共同行爲로서 「中小企業協同組合法」 및 「輸出組合法」을 制定, 組合의 結成을 적극 권유하였다. 또한 民間經濟部門에 있어서 政府의 比重이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 政府와 企業間의 中間 連結機構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民間에서도 事業者團體의 結成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1962年 이후 事業者團體의 設立은 크게 늘어나 製造業의 경우 만을 보더라도 1962年の 49개에서 1982년에는 145개로 되어 거의 모든 業種이 事業者團體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零細團體의 亂立과 함께 團體間의 機能의 중복도 불가 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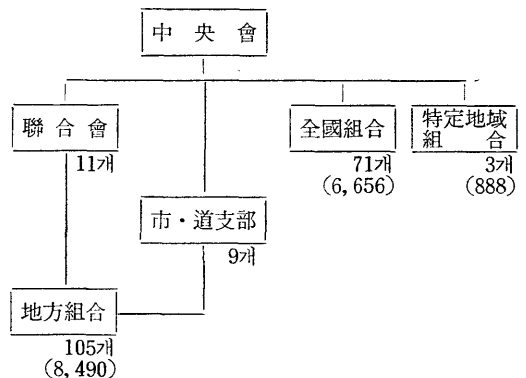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각 事業者團體를 組織形態別로

구분하여 全般的인 事業內容 및 活動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1. 中小企業協同組合

현재 우리나라의 中小企業協同組合(이하 ‘協同組合’이라 약칭)은 聯合會, 全國組合, 地方組合 및 特定地域組合의 4가지 組織形態가 있다. 全國組合¹⁴⁾이란 對象地域을 全國으로 하는 業種別 組合이고 特定地域組合¹⁵⁾은 일정 地域에 소재하고 있는 中小企業을 組合員으로 하여 結成된 地域團體이며 地方組合¹⁶⁾은 地域別·業種別로 構成된 組合으로서 이들 地域組合은 會員으로 하는 業種別 組合이 聯合會¹⁷⁾인데 이 관계를 그림으로 表示하면 [圖 1]과 같다. 1962年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이 制定된 이래 組合의 수는 계속 늘어나 <表 4>에서 보듯이 1981年 현재 聯合會 11개, 全國組合 74개, 地方組合 105개에 이르렀으며 組合員數도 15, 032 業體나 되어 어느 정도의 規模를 갖춘 中小企業은 대부분 協同組合에 加入하고 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中小企業의 外形的 加入要件에 관해서는 이미 拙稿(1979)¹⁸⁾에서 검토

[圖 1] 中小企業協同組合의 組織



註: () 안은 組合員數임.

14) 韓國電線工業協同組合, 韓國自動車工業協同組合 등이 이에 속한다.

15) 半月鍍金工業協同組合, 裡里工業團地 貴金屬寶石加工工業協同組合 등이 있다.

16) 서울織物工業協同組合, 慶南家具工業協同組合, 京畿道印刷工業協同組合 등이 이에 속한다.

17) 韓國軟食品工業協同組合聯合會, 大韓메리야스工業協同組合聯合會 등이 이에 속한다.

18) 李奎愷, 「우리나라 카르텔의 現況과 對策」,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피하고자하나, 다만 中小企業이 아닌 경우라도 전체 組合員數의 10%이내에서 主務部處와 該當組合의 許可가 있으면 協同組合에 加入할 수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자 한다. 이러한 根據에 의거하여 當該 業種에 속한 모든 大企業이 中小企業協同組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中小企業協同組合의 機能은 크게 大企業에 대한 對抗카르텔의 機能, 中小企業 保護機能, 技術支援機能, 共同事業을 통한 企業合理化 支援機能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서는 이러한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 協同組合이 행하여야 할 業務로 ① 生産·加工·受注·販賣·保管·運送·其他 서비스 등의 共同事業과 團地 및 共同施設의 造成·管理運營, ② 組合員間의 事業調整 및 中小企業 이의의 者가 當該組合의 事業分野를 침해한 경우 主務部長官에 대한 調整申請, ③ 母企業體와 都給業體간의 系列化 斡旋과 調整, ④ 組合員 生産品의 規格統一과 共同檢査 및 試驗研究, ⑤ 組合員에 대한 事業資金의 貸付 또는 貸付의 斡旋, ⑥ 經營指導 및 技術의 改善·向上을 위한 教育·情報의 提供, ⑦ 團體的 契約의 締結, ⑧ 福利厚生, ⑨ 政府委任業

務, ⑩ 輸出入 代行業務 등의 10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事業들은 상당수가 競爭制限的인 要素를 포함하고 있지만 中小企業保護·育成과 아울러 中小企業의 競爭力을 향상시켜 大企業과 대등한 競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政策的으로 허용하고 있는 事業이라 할 수 있다.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事業중 ① 및 ⑩은 共同事業을 통해 原價節減 및 企業合理化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④⑥은 中小企業의 技術向上과 効率性 提高를 직접 支援하는 事業이며, ②③은 中小企業과 大企業간의 關係에서 相對的 弱者인 中小企業의 保護를 위한 事業이라 할 수 있다. ⑦의 團體的 契約은 中小企業에게 직접적인 經濟的 惠澤을 주기 위해 官需物品의 購買時 中小企業에 契約의 優先權을 주는 團體的 隨意契約을 말하며 ⑤는 政府의 中小企業支援資金의 配定 및 組合員 出資로 造成된 資金貸付業務이고 ⑨의 政府委任業務는 대개가 輸出入 推薦業務 및 物資需給 報告業務 등이다.

모든 組合이 定款上에는 이러한 諸業務를 規定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事業은 ⑤와 ⑦의 資金支援 및 團體的

〈表 4〉 中小企業協同組合의 組織推移

	協 同 組 合 數				組 合 員 數		
	聯 合 會	全國組合	地方組合	計	全國組合	地方組合	計
1962	2	33	75	110	1,164	3,960	5,124
1966	15	57	112	184	2,290	5,487	7,777
1970	13	61	101	175	2,658	4,924	7,582
1974	15	56	112	183	3,189	6,957	10,146
1978	13	56	109	178	5,286	9,746	15,032
1981	11	74	105	190	7,544	9,480	17,024

註：特定地域組合은 全國組合에 포함.

資料：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隨意契約이며 여타 事業의 推進實績은 일반적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團體的 隨意契約은 <表 5>에서 보듯이 매년 급격히 늘어 總契約金額은 1970年の 57億원에서 1981년에는 3,280億원에 이르러 協同組合의 事業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事業은 어디까지나 中小企業에 政策的으로 부여된 特惠措置에 지나지 않으며 技術增進 및 效率性 提高를 통한 長期的인 中小企業의 育成·發展 및 競爭力 向上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協同組合 본래의 機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短期的 利益確保에만 편중된 현재의 활동을 지양하고 企業合理化를 支援할 수 있는 機能의 개발과 技術開發, 特化, 專門化 등의 事業을 擴大하여 技術組合의인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長期的인 中小企業의 育成과 競爭力 向上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企業合理化에 기여할 수 있는 施設·保管·運送 등에 있어서의 共同事業도 적극 추진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中小企業간의 競爭을 위축시키는 事業

은 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輸出組合

輸出業者間的 不公正한 去來를 防止하고 輸出去來秩序를 확립함으로써 輸出貿易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에 「輸出組合法」이 制定되었으며 1982年 현재 經濟企劃院에 中告된 輸出組合은 10개가 있다. 輸出組合의 加入資格은 同一品目の 物品을 취급하는 登錄貿易業者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生産業者도 組合員이 될 수 있다¹⁹⁾. 이에 따라 대부분의 輸出組合이 生産業者와 貿易業者를 組合員으로 하고 있다.

「輸出組合法」第12條에서는 輸出組合의 事業으로 ① 不公正한 輸出去來의 防止, ② 共同利益을 增進하기 위한 海外宣傳·市場調查·輸出調查·紛爭의 仲裁·共同施設, ③ 融資의 斡旋, ④ 輸出品의 共同 또는 委託에 의한 輸出 및 購入, ⑤ 輸出去來 또는 輸出과 관련된 國內去來에 관한 協定, ⑥ 기타 輸出去來秩序 確立에 필요한 事業 등 6가지를 規定하고 있다²⁰⁾. 輸出組合의 設立目的이 당초 對外交渉力 向上을 위한 輸出카르텔로서의 機能과 輸出代行機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事業 중 특히 ①과 ④의 事業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輸出組合法」 및 각 組合定款에 이러한 각종 事業이 明示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輸出組合은 일반적으로 組織上 地극히 零細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事業의 實踐性 여부는 매우 의심스럽다. 즉 대부분의 輸出組合이 3~4名의 職員으로 要式

<表 5> 團體的 隨意契約 締結實績

	指 定		實 績	
	對象組合數	對象品目數	組合數	金額(百萬元)
1966	23	233	10	1,738
1970	29	296	22	5,727
1975	30	397	24	33,151
1979	36	451	31	132,170
1980	40	489	35	222,548
1981	43	526	38	327,972

資料：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19) 「輸出組合法」第5條

20) 이러한 輸出組合의 活動에 대한 公正去來政策的 側面에서의 適法性 여부에 대해서는 拙稿(1979) 참조.

적인 절차에 불과한 輸出推薦業務나 기타 輸出에 부수되는 雜務處理 정도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實情이다. ①의 業務로서는 輸出價格審査(check price)제가 있으며 ② 및 ③의 業務는 現在 輸出組合에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④의 輸出入代行業 및 共同輸出業務는 최근 貿易業의 발달로 綜合商事 등 輸出專門企業이 많이 생겨나 輸出組合이 아니더라도 輸出을 代行業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輸出組合의 能力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⑤와 ⑥의 事業도 다른 事業들과 마찬가지로 그 執行實績은 매우 부진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輸出組合은 본래의 機能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 輸出推薦業務 등은 대개가 形式的 節次에 불과하나 輸出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要件이므로 取扱品目이 다양한 輸出業體는 該當 輸出組合에 모두 加入해야 한다는 弊端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輸出組合의 存廢問題를 民間의 자율적인 意思에 맡김과 동시에 불필요한 制度를 철폐하여 輸出組合을 段階的으로 정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폭적인 機能革新을 위해 현재 品目別로 지나치게 細分된 各 輸出組合을 統合하여 충분한 人力과 資金으로써 海外情報活動, 市場開拓, 海外販賣活動, 中小企業의 輸出入代行業務 등 輸出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活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其他 事業者團體

特別法에 의해 設立된 法定團體로는 酒類에 관련된 事業者團體와 運輸關聯 事業者團體가 많다. 이들 事業者團體는 각각의 特別法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그 수단으로써 政府에 의해 制度的으로 보장되거나 또는 각종 行政命令에 의거한 競爭制限行爲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수한 형태의 法定團體로서 農業協同組合, 畜産業協同組合, 水産業協同組合, 山林組合 등이 있는데 「公正去來法」에서는 이들 組合에 대해 中央會만을 事業者團體로 취급하고 있다. 特別法에 의한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의 妥當性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特別法이 지향하는 目標을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수단이 필수적인가 혹은 公共의 利益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상세히 檢討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民法에 의해 設立된 團體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民法에 의해 設立된 事業者團體는 주로 協會란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組合에 비해 會員數가 적고 大企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團體의 定款과 事業計劃書등을 검토해 보면 公正去來法이 施行되기 이전까지는 價格, 數量 등의 調整에 관한 事業活動을 明示한 것이 많았으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競爭制限의인 條項은 대부분 삭제되었다²¹⁾. 그러나 需給調整 등에 관련된 事業活動을 明示하고 있는 團體는 현재도 많은데 이는 주로 需給展望에 관한 研究·調査業務, 對政府 建議活動등으로 직접적인 競爭制限의인 요소

21) 1979年 本院의 調査에 의하면 農藥工業協會, 韓國絹紡協會, 韓國製粉工業協會, 韓國合板工業協會, 大韓製糖工業協會 등 많은 事業者團體의 定款에 價格調整, 過熱競爭防止, 生産調整 등의 業務를 規定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삭제되었음.

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明示的으로는 競爭制限에 관한 規定이 없더라도 大企業 相互間的 協議 또는 非公開的 談話등에 의거하여 競爭制限行爲를 자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리라 짐작되는바, 第Ⅳ章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協會의 業務중 자체업무 외에 政府委任業務에 의한 競爭制限行爲도 상당히 많다. 政府委任業務에 의한 競爭制限行爲는 주로 輸出入 推薦業務, 割當關稅 推薦業務에 의한 것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原資材의 配定등이 있다. 이러한 政府委任業務중 상당수는 制度의 存續자체가 불필요하며 오히려 進入制限, 原料配定에 의한 生産制限 등 反競爭的 結果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²²⁾. 또한 이러한 政府委任業務는 지나치게 細分化되어 각 團體에 配分되고 있어서 각종 類似團體의 亂立의 原因이 되기도 하며 각종 團體의 存續 妥當性만 부여하는 결과가 되기도 쉽다²³⁾.

또한 協會는 業界와 政府間的 中間 媒體로서 政府의 對業界政策을 會員社들에게 전달하고 業界의 意見을 集約하여 政府와 協議를 하는 機能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協會는 政府가 行政便宜主義的 發想에서

組織·利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思料되므로 產業政策 立案過程에서 業界 또는 協會의 意見이 비교적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協會는 근본적으로 該當業界의 既存業者들을 대변하는 利益團體이며, 私的利益이 반드시 國民經濟的 次元에서의 公共의 利益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事業者團體의 의견이 政府의 政策에 많이 반영될 경우 產業政策의 改善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亂立하고 있는 각종 事業者團體를 대폭 整備함으로써 類似한 機能을 統合할 필요가 있으며 政府委任에 의한 競爭制限行爲는 그 妥當性을 再檢討하여 최소한으로 局限시킴과 동시에 協會자체의 競爭制限的 機能을 배제하고 특히 國內에서의 活動은 순수한 情報交流 및 企業合理化 支援機能만 허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事業者團體의 活動과 評價：事例研究

지금까지 우리나라 事業者團體를 中小企業 協同組合, 輸出組合, 기타團體로 구분하여 一般的 活動類型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韓國電線工業協同組合, 韓國통조림 輸出組合, 大韓製糖協會 및 韓國飼料協會를 事例로 하여 活動現況을 評價해 보고자 한다.

1. 韓國電線工業協同組合

電線은 製品의 성격상 用途 및 規格에 따라

22) 예를 들면 割當關稅制度가 대표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品目の 경우 割當關稅對象物量이 國內需要에 비해 충분히 積貯되어 年間 全體輸入物量이 割當關稅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결국 關稅를 引下해 주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그 대신 新規進入者는 原料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進入을 포기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바, 이러한 品目에 대해서는 基本關稅率을 인하해주는 대신 割當關稅制度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品目으로는 紙類의 原料인 漂白化學 pulp, 설탕의 原料인 原糖등을 들 수 있다.

23) 예를 들면 韓國纖維協會는 內需用 原料의 輸入推薦을 하고 있으며 韓國纖維製品輸出組合은 輸出用 原料의 輸入推薦業務를 담당하고 있는바, 동일한 品目の 輸入에 대해 推薦機關을 구태여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800여종이나 되는 많은品種이 있으며, 各業體가 生産한 모든製品이 最終製品으로서 相互競爭關係에 있다. 현재 電線製造業體로는 金星電線, 大韓電線, 國際電線의 大企業 3社와 기타 中小企業 36個社, 18個의 零細業體가 있는데²⁴⁾, 大企業은 거의 모든品種을 生産하고 있는데 반해 中小企業에서는 一部品種만 生産하고 있으며 大企業 3社의 市場占有率이 약 85%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電線의 原料는 電氣銅을 가공한 SCR²⁵⁾(連續鑄造裝置: South Wire Continuous Roding System)로서 國內에서는 金星電線, 大韓電線, 豊山金屬 3個社에서 生産하고 있으며 여타 中小企業들은 이들로부터 SCR을 購入하여 電線을 製造하고 있다. 大企業은 技術·裝備·資金 등 모든 면에 있어서 中小企業보다 優位에 있기 때문에 品質面에서는 물론 原價面에서도 中小企業에 비해 유리하며, 이러한 經濟的 要因 외에도 大企業은 그들만이 生産하는 特殊品種에서 발생한 利益으로 中小企業과 競爭의 인 品種에서 발생한 損失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24) 1980年 『鑄工業 統計調查報告書』에 의한 숫자로서 大企業의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되었으나 零細業體는 극히 일부만 파악됨. 電線業界에서는 企業形態조차 갖추지 못한 業者까지 포함하면 零細業體의 數는 100여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25) 電氣銅을 지름 1~1.5cm정도 굵기의 銅棒으로 加工한 것으로 SCR裝置로 製造하였다고 해서 SCR이라 하고 있음.

26) 通信用 케이בל등은 中小企業에서도 극히 일부를 生産하기는 하나 대부분이 大企業에 의해 生産되고 있다. 이러한 品種은 競爭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利潤率이 높아 大企業의 경우 일반 電線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電線業界에서는 다른 業種과 달리 大企業에 의한 壟斷行爲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7) 電線工業協同組合은 1963年 設立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大企業 3社도 中小企業이었으므로 組合에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또한 原料를 大企業이 支配하는 현실에 비추어(電氣銅 獨占製造業體인 韓國鑄業製鍊이 金星電線, 大韓電線 및 豊山金屬의 合作投資會社인) 原料確保의 원활화를 위한 隘路카르텔(bottleneck cartel)의 성격도 갖고 있음.

로(cross subsidization)²⁶⁾ 中小企業이 大企業과 대등한 競爭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大企業이 되는 方法 이외에는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현재 電線工業協同組合에는 大企業 3社를 비롯하여 中小企業 31個社가 加入되어 있으며 이들 組合員들은 모두 團體的 隨意契約 등 組合의 共同事業에 참여하고 있다²⁷⁾. 電線組合은 定款上으로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諸事業을 明示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점을 두고 있는 事業은 團體的 隨意契約와 資金融資 및 斡旋業務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團體的 隨意契約는 各 組合員의 利害가 가장 집중된 事業으로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隨意契約 物量配定을 두고 여러가지 알력과 談合이 發生할 가능성도 있다.

大企業의 中小企業協同組合 加入에 대해서는 組合, 大企業, 中小企業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나 利害가 합치되는 部分도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者가 모두 現狀維持를 원하고 있는데 各자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協同組合의 立場: 組合에 大企業이 加入되어 있으므로 組合運營이 편리하고, 또한 大企業이 탈퇴할 경우 中小企業도 團體的 隨意契約時 價格面에 있어서의 不利益이 發生할 수 있고 對政府關係에서도 交渉力이 弱化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大企業이 組合에 계속 잔류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② 大企業의 立場: 組合에 加入하고 있음으로써 전체 隨意契約物量의 46%를 別다른 노력없이 확보할 수 있는 長點이 있으나 隨意契約를 통한 販賣額이 總賣出額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組合에 加入하고 있음으로

써 中小企業과의 여러가지 協商過程에서 불가피하게 양보해야할 경우도 많고, 또한 大企業이 자유로운 市場活動을 할 경우 현재의 市場占有率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組合의 加入·脫退여부에 큰 관심이 없다.

③ 中小企業의 立場: 모든 中小企業들이 大企業이 組合에 加入하고 있음으로 해서 中小企業에 귀속되어야 할 혜택을 共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大企業을 組合이나 隨意契約에서 排除할 경우 大企業이 民需市場에서 덤핑出庫를 함으로써 隨意契約條件을 惡化시키게 되거나 隨意契約制度의 存續자체가 위태롭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大企業의 참여는 계속 허용하되 隨意契約 物量配定比率만은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大企業을 組合에서 排除함으로써 團體的 隨意契約等 中小企業을 위한 政府의 혜택은 中小企業에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前者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中小企業이 모든 면에서 大企業의 競爭相對가 되지 못하므로 大企業을 組合에 계속 잔류시킴으로써 항상 大企業과의 協商의 여지를 남겨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3者の 입장을 검토해 보면 서로간의 目的은 다르지만 대체로 現狀維持를 원하고 있으나 그 반면 公正去來政策的 側面에서 볼 때는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中小企業 保護政策은 中小企業이 大企業과 동등한 競爭力을 갖출 때까지 限時的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電線業界의 경우 그러한 상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中小企業의 効率性이 향상된다고 할지라도 交叉補助等으로 大企業과의 競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補完策으로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에 市場을 分割하는 方案이 있을 수 있는데, 즉 「中小企業 事業調整法」에 의해 工程이 단순한 品目은 中小企業만이 專門的으로 생산토록 하고 大企業은 高度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特殊電線의 生産만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協商이 企業間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大企業에서 反對給付로 特殊電線 分野에 中小企業이 침투하지 않을 것을 條件으로 내세울 可能性이 크므로 特殊電線 分野에서의 潛在的 競爭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²⁸⁾.

이러한 점에서 政府가 單純品種에 대해서는 中小企業特化業種으로 指定하는 등의 방법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市場을 분리하여 單純品種의 경우에는 中小企業間的 競爭을 촉진시키고 特殊電線에 대해서는 市場을 開放하여 항상 潛在的 競爭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韓國통조림輸出組合

통조림輸出組合은 生産業體 77個社와 貿易業體 52個社로 총 129個 組合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表 6>에서 보듯이 통조림을 취급한다는 共通點은 있으나 매우 異質的인 企業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組合員을 業種別로 분류하면 農産物통조림製造業體, 水産物통조림製造業體, 貿易業體, 製罐業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통조림輸出組合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業務로는 통조림輸出價格의 維持를 위한 Check

28) 실제로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에 이러한 協商이 이루어 지기도 했는데 中小企業이 大企業市場을 침투한다고 해서 실현은 되지 않았다.

Price, 輸出自動規制品目인 굴·홍합·반지락·고등어통조림에 대한 輸出推薦, 통조림輸出에 관한 資料蒐集 및 出版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定款에 明示된 輸出入代行, 共同施設, 輸出支援資金配定 및 斡旋, 技術指導, 海外市場調査, 國內外去來에 관한 協定締結 등의 事業은 推進實績이 매우 부진하며 현재 組合의 能力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통조림輸出組合도 앞에서 지적한 여타 輸出組合과 같이 規模가 매우 零細하므로(職員數가 5~6명에 불과) 海外市場의 開拓, 販促活動등 輸出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業務를 수행하기는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어렵다고 생각되며, 또한 현재의 Check Price나 輸出推薦 등의 業務는 요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해 하나의 團體를 維持하는 것은 낭비라 할 수 있다. 기타 定款에는 明示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活動을 않고 있는 事業의 경우 과거 통조림輸出組合이 설립된 당시에 비해 民間企業의 成長이 현저하므로 現時點에서 상당수는 그러한 事業을 輸出組合에

서 담당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輸出組合을 현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그 存續의 필요성에 關해 많은 의문이 있다. 따라서 輸出組合 본래의 輸出카르텔 機能을 強化하고 中小企業의 輸出代行 및 海外販促活動등의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타 輸出組合과의 統合을 통해 보다 강력한 團體로 擴大할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大韓製糖協會 및 韓國飼料協會

製糖協會는 製糖 3社²⁹⁾를 會員으로 하고 있는 寡占企業間的 團體이며 飼料協會는 전국 58개 配合飼料製造業體를 會員으로 하고 있는 團體로서³⁰⁾ 두 産業은 原料의 높은 海外依存度, 裝置産業, 生産工程의 單純性 및 類似性 등의 共通點이 많다. 그러나 市場構造는 製糖業의 경우 大企業 3社가 市場을 支配하는 전형적인 寡占産業인 반면 飼料業은 第1位企業(푸리나 코리아)의 市場占有率이 7%에 불과한

〈表 6〉 韓國통조림輸出組合 會員現況(1982)

業 種	組 合 員
양송이 主生産業體	태원産業, 西園農産 등 10個社 경광商事, 慶北物産 등 31個社 금해, 東경産業, 무궁화食品 등 4個社 大韓綜合食品, 계양食品, 고성物産 등 32個社 高麗貿易, 國際商事, 三星物産 등 13個社 高麗食品, 高麗人蔘, 골든벨商事 등 32個社 永豊製罐, 國際板紙, 韓一製罐 등 6個社
栽培·加工·貿易業體	
栽培·加工業體	
加工業體	
水産物主生産業體	
貿易業體	
綜合商事 양송이 窓口	
單純貿易業體	
其他業體	

29) 第一製糖, 三養社, 大韓製糖을 말하며 이외에도 서울製糖이 있으나 協會에 加入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市場占有率 또한 1% 미만이다.

30) 配合飼料製造業體로는 民間業體와 畜産業協同組合에서 운영하는 飼料工場이 있는데 民間業體는 모두 飼料協會에 加入되어 있으며 民間業體의 市場占有率은 1981년의 경우 약 80%정도이다.

매우 경쟁적인 산업이나, 이들 두 단체의 활동을 비교함으로써 事業者團體의 활동이 市場構造와 어떠한 關係를 갖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製糖協會의 定款에는 ① 生産 및 需給에 관한 計劃·指導, ② 原資材購入·製品販賣資金·勞務등의 需給에 관한 指導 및 斡旋, ③ 技術向上·經營合理化 등 製糖工業의 發展強化에 관한 事項, ④ 政府委任業務등의 事業이 規定되어 있는데 現在 協會의 能力과 會員社가 모두 大企業이란 점을 고려하면 ①②③의 業務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製糖協會의 機能은 政府委任業務와 製糖 3社間의 중간連結機能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政府委任業務로는 原糖의 割當關稅推薦業務가 있다³¹⁾. 그러나 割當關稅適用 對象物量은 國內需要에 비해 충분하게 책정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製糖 3社가 導入하는 原糖은 모두 割當關稅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다만 장래의 物量不足時에는 製糖 3社가 과거 東立産業 및 鮮一포도당 共同引受比率인 약 50:32:18로 物量を 配定하기로 原則을 세워놓고 있다.

製糖 3社의 市場占有率は 약 50:32:18로 이러한 비율은 매년 거의 변동이 없으며 또한 이 比率는 製糖 3社의 生産能力比率, 割當關稅物量配定比率, 鮮一포도당 및 東立産業 共同引受比率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製糖 3社間에 販賣比率에 관한 協議나 暗黙의 談合이 있었을 可能性은 크다. 또한 이러한 數量制限의 可能性 외에도 製糖工業이 裝

置産業이며 만성적인 施設過剩狀態임에도 불구하고 價格競爭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價格 또한 同一한 점을 고려하면 價格에 관한 談合 또는 意識의 平行行爲의 蓋然性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製糖業界는 3社에 의한 寡占狀態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協會의 存在 여부에 상관없이 公式·非公式의 會合, 暗黙의 相互諒解, 意識의 平行行爲 등을 통해 競爭을 회피할 可能性은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協會는 競爭制限을 主導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각 企業間의 連結를 좀더 쉽게 해주고 企業間의 異見을 調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競爭制限行爲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으로는 競爭制限行爲의 推定要件을 강화함으로써 監視體系를 확립하고 長期的으로는 制度的 進入障壁을 철폐하여 産業構造를 競爭型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飼料協會의 重要 事業으로는 政府委任에 의한 政府糧穀副産物配定 및 原料의 共同輸入·配定이 있으며 定款상의 自體事業으로 ① 技術 및 品質向上을 위한 指導, ② 調査·研究·弘報 및 出版物刊行, ③ 融資斡旋 등의 業務가 있다. 이러한 自體事業은 모두 企業合理化 및 效率性의 提高를 支援할 수 있는 事業으로서 그 推進實績도 여타 事業者團體에 비해서는 매우 활발한 편이다. 政府委任業務중 政府糧穀副産物配定은 糧穀副産物의 價格이 다른 原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供給에 비해 需要가 超過狀態에 있기 때문인데, 현재 各社別 原料使用 實績과 生産實績을 감안하여 配定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配定되고 있다. 또한 原料의 共同輸入·

31) 이외에도 國際標準機構(ISO)의 agent로서의 機能도 상당히 중요하나 競爭政策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李奎億, 『競爭促進政策 改善方案研究시리즈 2: 製糖』, 短期政策研究資料 82-31 참조.

配定도 原價節減으로 企業合理化에 기여할 수 있는 事業이라 판단된다.

飼料協會는 이와 같은 事業 외에 과거 過當 競爭을 지양하기 위해 「流通秩序確立委員會」를 설치하여 會員社간의 販賣價格 및 條件에 관한 競爭을 회피하고자 한 적이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中小企業의 競爭力強化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會員社間的 자율적인 統廢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事業들은 飼料協會의 會員社 數가 많고 또한 각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實效성은 거의 없다. 또한 飼料業界는 市場支配力을 행사할 大企業도 없으므로 飼料協會가 強制力을 동원하지 않는 한 競爭制限行爲를 主導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설사 各 企業間的 利害가 합치되어 일시적으로는 共同行爲가 可能할 지 모르지만 長期的인 實效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飼料協會는 技術指導, 情報蒐集, 研究·調査, 原資材 共同購入등 企業合理化 및 效率性提高를 위한 일반적인 事業 이외에는 그 推進이 어려우므로 飼料業界에서는 競爭制限을 위한 共同行爲가 자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製糖協會와 飼料協會의 事業內容 및 活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當該產業의 競爭與件이 事業者團體의 活動과 중요한 關係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市場構造가 寡占의 일수록 事業者團體가 競爭制限을 위한 共同行爲에 간여할 可能性이 크고, 競爭型產業인 경우 事業者團體가 競爭制限을 主導하더라도 그 實效성은 거의 없으므로 事業者團體의 활동은 자연히 市場狀態에 관한 一般的 條件만을 제시해 주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寡占事業者에 의해 결성된

事業者團體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한 監視體系가 필요하며, 또한 事業者團體의 會員社間 中間連結機能을 억제하고 長期的으로는 當該產業을 競爭型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結 言

事業者團體는 市場機能를 보완함으로써 當該產業의 전반적인 競爭을 促進할 수도 있으나 構成事業者의 共同利益을 추구하기 위해 共同行爲를 주도하거나 構成事業者의 事業活動을 간섭함으로써 競爭을 저해할 가능성 또한 크다. 이러한 이유로 「公正去來法」에서는 事業者團體가 共同行爲를 主導하거나 또는 構成事業者의 事業活動을 制限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있으며 모든 事業者團體는 經濟企劃院에 申告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事業者團體는 特別法에 의해 設立된 法定團體와 民法 또는 임의에 의해 設立된 任意團體로 구분되는데 法定團體로는 中小企業協同組合, 輸出組合, 其他 法定團體가 있다. 法定團體는 特定產業 및 特定企業階層의 保護·育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당초 設立趣旨와는 달리 短期的인 利益追求를 위한 事業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長期的인 企業의 效率性 및 合理性을 提高할 機能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中小企業協同組合은 大企業에 대한 對抗카르텔로서의 性格을 強化하기 위해 協同組合에서 大企業을 排除함과 아울러 技術組合의 性格과 企業合理化를 支援할 機能을 확충하여

長期的으로 中小企業의 競爭力培養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中小企業間的 競爭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輸出組合은 현재 그 機能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輸出組合 設立當時와 현저히 달라진 經濟與件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組合은 自然淘汰시킴과 동시에 組合의 統廢合을 통해 보다 強力한 中小企業의 輸出代行機構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公正去來法」施行 이후 任意團體에 있어서 明示的인 競爭制限行爲는 거의 없어졌으나 暗黙的 談合, 意識的 平行行爲, 構成員間的 意見調整 등을 통해 은밀하게 共同行爲를 助長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傾向은 寡占型產業일수록 심한데 이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共同行爲의 推定要件³²⁾을 엄격히 함으로써 監視機能을 強化하고 長期的으로는 制度 및 行政的인 進入障壁을 剷除하여 產業을 競爭型으로 誘導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2) Posner, R.A.는 談合의 發生可能性이 높은 產業과 그러한 產業에서의 談合의 推定要件을 설명했는데 그에 의하면 談合의 發生可能性이 높은 產業은 다음과 같다.

- ① 供給側面에서의 市場集中率이 높은 產業
 - ② 中小企業의 數가 적은 產業
 - ③ 競爭價格水準에서 需要가 非彈力的인 경우
 - ④ 新規企業의 進入期間이 긴 產業
 - ⑤ 需要者가 多數인 產業
 - ⑥ 製品의 標準化가 높은 產業
 - ⑦ 重要企業들의 都賣價格이 同一한 產業
 - ⑧ 價格이 가장 중요한 競爭手段인 產業
 - ⑨ 固定費의 比重이 높은 產業
 - ⑩ 需要의 變動이 없거나 減少하는 產業
 - ⑪ 去來價格이 非公開되고 있는 產業(sealed bidding)
 - ⑫ 과거 反트러스트 法律違反이 많던 產業
- 또한 그는 談合의 證據로 다음과 같은 事項을 열거하였다.

- ① 相對的인 市場占有率의 變動이 없는 경우
 - ② 價格差別
 - ③ 價格情報의 交換
 - ④ 原價와 상관없는 地域別 價格差異
 - ⑤ 非標準化 品目에 대한 入札價格의 公開(identical bids)
 - ⑥ 특별한 이유없이 價格, 生産量, 生産能力 등이 변하는 경우
 - ⑦ 産業全般的인 再販賣價格維持
 - ⑧ 先導企業의 市場占有率 減少
 - ⑨ 價格變化의 期間과 幅이 큰 경우
 - ⑩ 現在價格에서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큰 경우
 - ⑪ 産業全般的인 利潤率 및 大企業의 利潤率이 큰 경우
 - ⑫ 基準距離價格制(basing-point system)이 존재하는 경우
-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Posner, R.A. *Antitrust Law* 참조.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事業者團體設立申告現況』, 1982.
 _____,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0.
 _____,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심결집』, 1982.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韓國開發研究院, 1977.
 _____, 『우리나라 카르텔의 現況과 對策』,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_____, 「카르텔規制와 産業政策(1)」, 『韓國開發研究』, 第4卷 第2號, 韓國開發研究院, 1982.
 _____, 『競爭促進政策改善方案 研究시리즈 1: 飼料』, 韓國開發研究院, 1982.
 _____, 『競爭促進政策改善方案 研究시리즈 2: 製糖』, 韓國開發研究院, 1982.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 現況: 中央會業務推進實績』, 1982.

韓國電線工業協同組合, 『電線組合 15年史』, 1979.

公正取引委員會 事務局, 『事業者團體の活動に関する獨占禁止法上の指針』.

田中誠二(外), 『エンメンタール 獨占禁止法』, 勁草書房, 1981.

地頭所五男(編), 『詳解事業者團體活動指針』, 財團法人 公正取引協會, 1980.

Blumner, S.M. and Hefner, D.L. (ed)., *Readings in the Regulation of Business*, International Textbook Company, 1968.

Fusilier, H.L. and Darnell, J.C., *Competition & Public Polic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Hills, C.A. (ed)., *Revised Edition of Antitrust Adviser*, McGraw-Hill, Inc., 1971.

Posner, R.A., *Antitrust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Stelzer, I.M. and Kitt, H.P., *Selected Antitrust Cases; Landmark Decisions*, Richard D. Irwin, Inc., 1972.

〈附表 1〉 主要特別法에 의해 設立된 事業者團體

法 律	事 業 者 團 體
中小企業協同組合法 輸出組合法 農業協同組合法 水產業協同組合法 畜產業協同組合法 鹽業組合法 酒 稅 法 食品衛生法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 藥 事 法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각 中小企業協同組合聯合會, 각 地方中小企業協同組合 各 輸出組合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동조림 製造水產業協同組合, 冷凍物製造水產業協同組合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大韓鹽業組合 大韓濁藥酒中央會, 大韓酒類工業協會, 各地方 濁酒都賣協會 各種 飲食物同業者組合 韓國纖維產業聯合會 大韓化粧品工業協會, 大韓藥品工業協會, 大韓醫藥品都賣協會, 大韓藥師會, 韓 國醫藥品輸出入協會, 大韓漢藥協會
音盤에 관한 法 電子工業振興法 自動車運輸事業法	韓國音盤協會 電子工業振興會 全國버스運送事業組合聯合會 및 同地方組合, 全國택시旅客自動車運送事業組合 聯合會 및 同地方組合, 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組合聯合會 및 同地方組合
道路運送車輛法 韓國海運組合法 海運振興法 自動車停留場法 導 船 法 觀光事業法 海外建設促進法 建設共濟組合法 建 設 業 法 電氣工事業法 電氣通信工事業法 山林組合法	韓國自動車整備事業振興會, 韓國自動車販賣業協會 韓國海運組合 韓國船主協會 全國버스停留場協會 및 同地方支部 韓國導船士協會 韓國觀光協會 및 地方觀光協會, 韓國特殊觀光協會 海外建設協會 建設共濟組合 大韓建設協會 및 同地方支部, 大韓建設協會單種會員全國協議會 韓國電氣工事協會 韓國電氣通信工事協會 山林組合中央會

資料：經濟企劃院